

- '19. 10. 道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(안) 마련을 위한 T/F 수립
- '19. 11. 팔당 특별대책지역 규제합리화 T/F 회의 추진
- ~ '20. 05.
- '20. 06. 30.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(안) 마련 및 환경부 건의
- '20. 07. 관계기관 회의 및 국회 방문 협조 추진
- ~ '22. 02.
- '22. 02. 10. 특별대책지역 고시 행정예고(안) 검토의견 제출
- '22. 05. 03.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개정 완료

개선효과



- 개별공장 재배치 ·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폐수관리(공공처리) 와 엄격한 기준 적용(BOD 40mg/L → 10mg/L)을 통한 상수원 안전성 확보

(단위 : mg/L)

구 분	개별처리 (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)				공공폐수처리			
	청정지역	가지역	나지역	특례지역	I	II	III	IV
BOD	40	80	120	30	10	10	10	10
TOC	30	50	75	25	15(25)	15(25)	25	25
SS	40	80	120	30	10	10	10	10
T-N	30	60	60	60	20	20	20	20
T-P	4	8	8	8	0.2	0.3	0.5	2

- 주거지역 내 난립한 공장을 이전하여 계획입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
- 폐수 발생 우려가 없는 일부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허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

05 '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' 세부 운영 개선을 통한 규제 합리화

추진부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☎ 031-8008-5564

개선배경



- 「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(이하 '특수조건')」제3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됨.
- 다만, 해당 사항의 운영을 위하여 공사계약의 신규 및 변경 계약 체결 시 발주청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미반영 시 산출내역서의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사항이 발생함.

[사례]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「지방계약법」 등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자율로 작성되는 사항으로 발주청에서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으며,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임의로 반영하는 경우 재료비 또는 경비 단가를 하향시키거나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등의 제경비를 하향시켜야 하는바 설계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.

❖ 「특수조건」 세부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소지를 제거

개선내용



- 개선 전**

 - 계약(변경계약, 하도급계약 포함) 체결 단계에서 발주청이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여 미반영 시 반영을 요구

→

개선 후

 -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관여 항목을 삭제하고 '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(신설)' 징구 및 '시중노임단가 이상 의무지급 대상공사'임을 사전 안내 후 계약 체결
 -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여 「특수조건」의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,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함.

- '22. 01. 15. 경기도에 1차 공무원 제안
 - 「특수조건」 세부 운영 내 계약상대자의 권리 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제안
- '22. 02. 16. 경기도 제안 불채택
 - 적정임금 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 불채택
- '22. 04. 05. 경기도에 2차 공무원 제안
 -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작성 관여에 대한 불합리성에 따른 개선 제안
- '22. 06. 15. 경기도 제안 채택
- '22. 06. 17. 「특수조건」 세부 운영 사항 변경 실시
 - 발주청의 산출내역서 관여 우려 사항 삭제 및 「경기도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 각서」 신설

개선효과

- 법령 및 기준의 규정 사항 외에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소지를 제거함으로써, 「특수조건」 제정 취지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수 있음.
- 계약체결 시 「특수조건」에 대한 이행 확약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「특수조건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.



06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

추진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 ☎ 031-8008-410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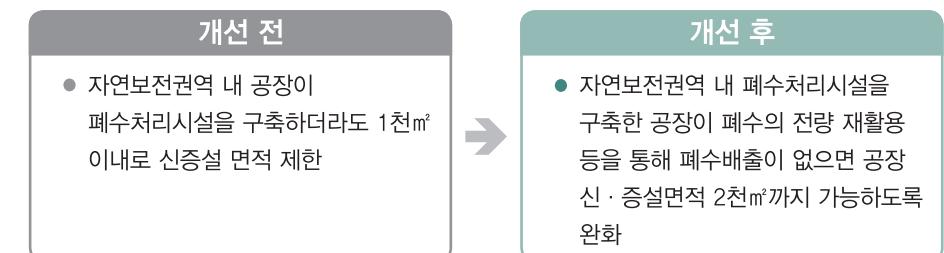
개선배경

-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 m^2 이내로 제한
 -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은 신증설 면적 제한 없음(산집법 시행령 별표3)
-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않아 취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공장 신증설면적 1천 m^2 이내로 제한
 - ※ 폐수배출시설 :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

[사례] 여주시 소재 T사는 폐수를 전량 재이용 ·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필요한 만큼의 공장증설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한 증설이 가능

개선내용

-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이라도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의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신·증설 면적 확대(1천 m^2 → 2천 m^2 / 산업통산자원부)
 - 규제개혁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공장 신·증설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를 추진



*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3] 개정 예정('23년)